

『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, 개관 이래 변동되지 않았던 사용료를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사용취소 조항 개정(안 제4조)
- 홍보관, 다목적실, 전시실 사용료 인상(안 별표)
 - 현재 : 900원/㎡ → 인상안 : 1,000원/㎡
- 시설 명칭 변경 및 야외전시장 사용료 추가(안 별표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줄 수 있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, 2010.04.22. 제정된 이후로 변동되지 않았던 전시실, 회의실 사용료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